

의안번호	제 409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9월 일 (제 283 회)

**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
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박재국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09년 9월 2일

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년 9월 2일

발 의 자 : 박재국, 연만흠, 강태원
김환동, 이필용, 장주식
조영재의원(7인)

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 ⇒ 제15조

나. 연서주민수(안 제2조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 ⇒ 제15조

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발췌 : 지방자치법(별첨)

나. 관련부서 협의 : 의견없음(행정국)

다. 규제심사 :

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조의3”을 “제1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13조의3”을 “제1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후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3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시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연서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시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연서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5조 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"19세 이상의 주민"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2.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의 부과·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
3.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